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687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 문진석·박정현·송기헌

이춘석 · 김 윤 · 이재관

윤종군 · 김동아 · 이연희

김문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장을 노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여 노외주 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최근 차량의 대형화 및 주차장치의 노후화로 인하여 개선 혹은 신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과는 달리 국가 등의 지원이 없어 사용하지 않는 채로 방치되는 부설주차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의 공급 확대를 통한 도시의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또한 대형화되는 전기차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자동차의 크기, 무게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 시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의5제1항).

법률 제 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자동차의 크기·무게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노외주차장의 설치를"을 "주차장의 공급을"로,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을 "노외주차장의 설치 또는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관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선하거나 보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 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의	기준 등) ①
설치기준은 <u>국토교통부령으로</u>	<u>자동차의 크기</u>
정한다.	•무게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
	<u>통부령으로</u>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u>노외주차</u>	<u>주차장의</u>
<u>장의 설치를</u> 촉진하기 위하여	<u> 공급을</u>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노외주차장의 설치</u>	노외주차장의 설치
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또는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
부를 보조할 수 있다.	수에 관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